

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1. 4. 16.>

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(제7조제4항 관련)

측기의 종류	검정유효기간(년)
온도계	3
기압계	3
습도계	3
풍향계	3
풍속계	3
일조계	5
일사계	5
강수량계	3
증발계	5
적설계	5
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	각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

비고: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상측기를 6개월 이내에 교체하거나 폐쇄할 예정인 경우, 관련 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